

제39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월5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6)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99)
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04)
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7)
5.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93)
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6)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7)
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87)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5)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87)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75)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47)
13.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300)
1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08089)
1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11958)
16.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100059)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792)
18.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568)
19.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13383)
20.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4140)
21.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496)
22.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045)
23.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325)
24.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159)
25.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419)
26.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03438)
27.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627)
2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188)
29.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318)
30.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416)
3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722)

상정된 안건

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	2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9)	2
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	2
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7)	2
5.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 ...	13
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 ...	13
7.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7) ...	13
8.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7) ...	13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5)	15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7)	15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5)	15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7)	20
13.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0)	20
1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9) ...	20
1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8) ...	21
16.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9)	21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2)	21

(10시11분 개의)

○소위원장 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틀 연속 법안소위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님 출석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존경하는 박재호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법안 심사 일정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여 바로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6)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99)

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4)

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7)

(10시14분)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주민투표법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동 주민투표법 4건은 어제까지 두 번의 소위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간략하게 쟁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에 대한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소위 심사를 통해서 정부안대로 격리조치를 받은 주민의 주민투표권의 보장 근거를 신설할지, 공직선거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거소투표를 하게 되면 공정한 진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선관위에서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혹시 주민투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거소투표를 좀 더 보장해주는 장치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민투표법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공직선거법과 연계시키지 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가 끝났다면 정부안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5페이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설명회·토론회의 개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토론회를 개최할 때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7페이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경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10쪽의 주민투표 실시요건 의무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적법한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12쪽의 선상투표제외 명확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현황을 법에 명확히 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심사 결과 이에 대해 누구라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해서 선상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4쪽의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예외 사항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예외 사항에 있어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입장.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폐지·분합 등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위원님 의견은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반대하는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지역 내에 한정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안이고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지역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전개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본래 주민투표법의 목적이거나 이런 것과는 상충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형석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아무리 국가정책이어도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뭐가 결정이 나더라도 이게 그런 정책 이행에 대한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주민투표는 갈등과 혼란 상황을 사실상 종결짓는 마지막 의사결정의 과정이고요. 그 안에, 그 이전에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조치들이 있을 거고요. 관리하는 방안을 거쳤어도 조정·중재가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 주민투표를 거쳐서 하는데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안들이 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부터 시작해서 공항, 모든 SOC 기반 시설들, 심지어 송전탑·배전탑까지 시작해서 많은 사안들이…… 그러한 중요한 국가의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를 각 개별법에서 전부 다 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합당하고 정당하게 거쳐서 결정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께 의견을 물어서 이게 또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이형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사항들 또 밀양의 송전탑 관련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과 배치돼서 국가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어도 분권이나 자치에 대한 확대 개념으로 그런 걸 인정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국가가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는 절차,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결정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 업무에 속하는 경우는 주민투표가 마지막 의사결정의 구속을 갖겠지만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재호 답변할 게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중앙부처와 지방의 의견도 들어 봤는데요.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선호하는 정책도 있을 테고 또 선호하는 정책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러면 이게 이제 주민투표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사안들을 주민투표에 걸어야 되고 또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

석상 국가정책의 범위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주민투표법 8조에 의하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상당히 제한적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대상으로 국가정책을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형석 위원 개정안도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물론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국가정책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단체장이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이에 갈등을 줄이자고 하는 이 법의 목적보다 오히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이형석 위원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갈등이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갈등을 더 줄이는 게 되겠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명수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이명수 위원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주민투표법이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상례화되거나 일상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방의회를 통해서 거르고 거기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것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이게 예외적으로 되어야지, 그러면 의회가 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포괄적으로 허용하면 대부분, 소위 요즘 말하는 국가 차원의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투표를 한다고 할 경우에 거의 다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부 의견 얘기한 대로 정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 그걸 예외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게 지방자치 본래의 참 뜻도 아니고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라고 봐서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고 유일한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거든요. 최종 마지막 수단인데 지금 정도로 가고 나중에 또 다른 여건 변경이나 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완전한 분권 체제로 간다든가 그런 저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다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도 이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국가정책의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고요. 지금 갈등과 분열이 점점 사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로 더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지역별로도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주민투표에서 실제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시지요.

○김민철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신중 검토에 의견을 같이하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좀 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관님, 한 가지 여쭙볼게요.

폐치·분합에 있어서 시군이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단체장들이 거기 2개 시군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투표 실시를 권고할 수가 있고요.

폐지·분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모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게 일차적이고요. 다만 필요한 경우 주민투표, 주민 의견을 같이 보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투표를 2개 지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 의견을 들어서 그냥……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양쪽 것을 다 보자……

○**김민철 위원** 그런데 양쪽에서 다 이야기를 해도 요청이 오면 거의 대부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기는 단체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주민들에게.

○**김민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신중 의견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22쪽의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청구 절차에 종이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외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27쪽의 주민투표 발의·청구일 등 제한 폐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주민투표법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 발의 및 서명 요청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한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는 정부 의견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주민투표 본래의 목적에 반해서 청구일을 제한하는 걸 폐지하면 지방의 정치적 혼란

이 더 가세될 것 같아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어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30쪽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는 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33쪽, 주민투표일 법정화 사항입니다.

정부안과 위성곤 의원안 두 가지인데요. 정부안은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여 투표일을 법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에 맞추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 주민투표일 결정에 있어서 선택권 부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투표일 법정화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일 법정화 의견이고요. 다만 법정화에 따른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에 예외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고요.

위성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것은 위원님들 어제 충분히 의논을 했고 아까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안으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재호** 예, 수정안.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수정안에는 검토의견 제

일 밑에 있는 공직선거법상에 있는 민속절과 겹치는 경우에 다음 주로 연기하는 그 규정을 주민투표법에도 반영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37쪽입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제한 폐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실시구역 지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저희가 38쪽에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다음에 김민철 위원님 어제 이 문제를 해 가지고 이 항을 넣었지요.

○김민철 위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제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구역은 단체장한테 그 권한이 부여된 듯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방의회에…… 그 부여까지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됐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40쪽입니다.

전자주민투표 도입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에 있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개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경과 전자주민투표의 신뢰성 등의 확보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자주민투표의 도입 범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쪽 정부안에 진하게 한 글씨 중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 이 부분을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행

안부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어제 이영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 문제가 수정이 됐으니까,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48쪽입니다.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 및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운동 기간을 주민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첫 번째,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운동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적 정합성 등을 위해 통·리·반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위원 또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운동 기간 축소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하고요. 통·리·반장에 대해서만 주민투표운동을 금지하는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어제 이것은 충분히 선관위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 있으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차관님, 주민자치회도 거론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회원들은 당연히 자유롭게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최춘식 위원 제재받는 것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키는 데가 금년에 또 생겼던데 그것 그대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현재에서는?

지금도 시범운영 기간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최춘식 위원 그러면 몇 년을…… 시범운영을

2013년부터 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언제까지 시범운영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으려고 여러 차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으셔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범 실시는 저희가 거의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지방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자치법에 다 저희가 넣었는데……

○최춘식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 논의하는 건 아닌데요.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년 해 가지고 실효성에 대한 부분과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거의 10년간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에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이것 어떻게 규정하실 거예요?

옆에서 그냥 답변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답변을 주셔야지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선거운동이나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전혀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소위 말해 시범운영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데 그분들은 또 이런 선거법의 적용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타당한 조치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자체별로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은 좀 있습니다만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좀 더 강화된 기능으로 주도적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과도기인데요. 여기 통·리·반장 외에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하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원도 주민자치회 위원과 같은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해석이, 동등하게……

○최춘식 위원 그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확실합니다.

○최춘식 위원 받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왜냐하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반열로 해석을……

○최춘식 위원 지난 선거 때는 적용 안 받았잖아요, 주민자치회원들. 선거법 적용 안 받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자치회 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원이 앞으로, 오늘 이번에도 또다시 개편이 돼 가지고 바뀌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쇄가 되고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느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느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없습니다.

○최춘식 위원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해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 제재 안 받았잖아요.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공직선거법상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예로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춘식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은 돼 있다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자치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춘식 위원 주민자치회원,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금 저희 동일하게 선거법상……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저희는 동일하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최춘식 위원 지금 여기서도 정확히 동일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걸 따로 저희한테 답을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까지 이것 적용 안 받았어요, 주민자치회원들. 선거운동 다 했잖아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답변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 명료하게 돼 있었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동일한 지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춘식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는 그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그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시범운영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꼭 한번 주셔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범 실시하고 정리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알려 주시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민투표 이것은 주민투표법에 한해서 있던 내용이니깐 그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법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곡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법안 심의 때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자치권을 더 강화시키고 보장하는 게 주민자치회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이형석 위원 그리고 이게 시범 실시된 게 박근혜정부 때부터, 2013년부터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면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공산당법이다 이런 지역 주민들을 호도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당초의 주민자치회로 가려는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왜 박근혜정부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새로운 제도로 가려고 했었는지 그런 취지들을 설명을,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관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소위원장 박재호 예, 최춘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차관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발전돼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 뭐가 있느냐면 사실 위촉권만 바뀌는 거지요. 읍·면·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 옛날에 개발자문위원회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제가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변천되고 바뀌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표로 만들어 주시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최춘식 위원 전에 제가 듣던 말씀으로는 이렇게 있었어요.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자치회장도 상근을 요구하게 되고 회계도 독립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도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바뀌는 게 없어요.

세종시 같은 데인가, 어딘가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자료도 가져왔었지만 주민세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줘 가지고 사업하겠다, 그런데 그것 근거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그 근거법을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읍면동 단위로 주민세를

차등 부과·징수하고, 그 부과·징수된 주민세 중의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편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

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형태는 사실상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단계였었고요. 주민자치회가 되면 좀 더 자치가 공고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읍면동에서 하는 기능을 위임·위탁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적정한 형태의 수입·지출의 구조도 만들어 줘으로써 주민들과 밀착된 자치를 하도록 유도한 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최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도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다음에 상임위 할 때, 이 법안이 올라올 때 이야기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거의 마지막인데 여기서 수석전문위원님, 동의를 완전 받아야 될 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관련해서는 정부안대로 13일로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 위원은 추가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투표운동 기간은 축소하자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통·리·반장만 주민투표운동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자치영역이니까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그 말에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투표니까……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제가 어제 소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운동기간을 일반 주민들이 준비를 해서 만드는 데 13일이 굉장히 촉박해요. 우리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주민투표 의견의 뜻을 더 많이 주민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은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주민자치위 위원 거기까지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정부안대로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기간을 오늘 며칠…… 왜냐하면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며칠로 돼 있어요?

○이형석 위원 23에서 30일.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13일이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형석 위원 13일은 너무 짧고 3주 정도, 21일……

○백혜련 위원 그러면 3주로 해요, 21일.

○김민철 위원 현행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또 너무 길면 갈등의 요인이 돼서……

○이명수 위원 저는 축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축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너무 길어도 갈등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뻔히 다 아는데……

○이형석 위원 3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한 얼마…… 지금 며칠 하신다고요, 법에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운동 기간과 주민투표 의견 개진 기간을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주민들께서는 이것도 일종의 투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의견이 정리가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서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김민철 위원님 안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주민투표와 관련된 투표 대상이 대개 보면 자치단체장이 의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민과 자치단체장의 갈등 구도에서 나오는 주민투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일로 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23일에서 30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한 3주 정도, 21일 정도 기간을 두면 주민들도 충분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기간은 이형석 위원님 말씀처럼

3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좀 아셔야 될 게 공직선거법에 13일은 예비기간도 있고 준비기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예를 들어서 예비기간을 며칠 준다든지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서 이 상태로 저는 유지를 하면 좋겠는데 또 이형석 위원이 3주 정도 하시자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3주 정도.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그러면 한 3주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단체장한테 불리한 선거가 되고 또 유리한 선거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되는데 충분히 알릴 기간은 필요하다 해서 한 21일 정도로, 3주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명수 위원 글썄요, 저는 이게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운동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 주민투표에 붙일 건가 말 건가, 주민투표 내용이 이미 다 알려지고 지금 다양한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기간을 오래 주면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것은 지금 정부안대로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로 이십며칠 동안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쟁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 간에 공유가 된 사안에 대해서 또 서명 명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구조는 돼 있고……

○이명수 위원 차관님, 지금 주민투표의 참여율, 투표율이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투표율이 낮아서 지금 다음 항에 개표 요건과 확정 요건을 완화할 정도로 참여율이 낮습니다.

○이명수 위원 낮기는 한데 그게 아마……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냐 그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낮는데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투표 참여율이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전에 이미 알려지고 지역 언론 통해서 많이 된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해서 운동기간 준 게 얼마나 그거거든요. 이것을 이십며칠 동안 길게 있어야 될…… 사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어느

정도 절차도 중요하지만 빨리 신속한 결정을 해 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간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하고 다르게 봐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3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갈등요소 이런 게 더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직선거법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더 줄여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래서 이것은 주민투표하고 주민들한테 좀 더 알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알리려고 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준비도 하고…… 20일이라고 20일,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3주 정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여야 의견이 조금은 엇갈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 3주 하는데 일주일만 이런 기간을 주는데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걸 알리는 기간도 필요하고 양쪽이 다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만 결정이 되면 오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명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 3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명수 위원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재호 지금 며칠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23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이명수 위원 그렇게 많이 줘도 참여율이 20%, 30%밖에 안 돼요. 기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여야 돼요. 운동기간만 이렇게 주는 거고 그 전에 이 안전에 대한 내용이나 이것은 지역 언론이라든가 많이 쟁점화돼서 그다음에 주민투표 대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김민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틀, 체계가 잡히는 데 그 기간이 많이 걸려요, 시작을 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개 보면 그 기간 안에 운동기간이 짧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으면 준비가 돼서 착착 운동기간에 들어가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선거하고 똑같이 볼 필요는 없는데……

○**김민철 위원** 그 전에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지요.

○**이명수 위원** 자치단체의 결정이 절차가 중요하고 시간이,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동안에 주민투표 한 것 즉 보면 시간을 많이 부여한다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빨리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다음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대통령선거는 23일이고 광역선거 이런 것은 14일인데 한 23일에서 30일로 했는데 일단 21일로 한번 해보지요. 어떻습니까?

○**이명수 위원** 절대적인 건 아닌데 다수 의견이……

○**소위원장 박재호**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느냐는 이쪽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데 양쪽 의견이 좀 평행할 때는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한 3주 정도 주면 충분하니까 21일로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결정을 하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그러면 주민자치위 위원도 금지 대상에 포함……

○**소위원장 박재호** 주민자치위 위원은 허용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주민자치위 위원은 허용입니다, 통·리·반장만 금지고.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안대로……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52쪽에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완화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정부안, 위성곤 의원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주민투표 확정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권자의 8분의 1의 득표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개표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초 개표요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개표요건 폐지 시 오히려 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안이 뭐였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완화해서 4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되면 확정요건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어제 이 의견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야기는 됐는데 혹시나 더 의견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김형동 위원** 선관위 나와 있으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선관위 나와 있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을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좀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도 좀 얘기했다가 치웠는데요. 선관위 의견이 바뀌었는지, 유지되는지 좀 여쭙보려고 그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말입니다. 주민투표운동 금지 대상에 포함 안 시키고 독려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어제 선관위의 의견은 정부안에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견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국장 김재원** 예, 정부안과 같은 의견입니다.

○김형동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꼭 방망이 두드리려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리 발언권을 줌……

위원회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93)

6.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6)

7.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7)

8.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7)

(11시02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관계기관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도 어제까지 두 번의 소위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간략하게 쟁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직장협의회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연합협의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정안들의 내용을 포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9쪽입니다.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인데요. 이은주 의원안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

급 기준을 삭제하고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 외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오영훈 의원안은 가입 제한 대상을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일부 축소해서 가입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 논의 결과 직장협의회 가입 직급 기준 삭제,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 등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수정의견은 12쪽부터 13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어제 이야기한 대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 14쪽, 협의회 협의사항 확대 안전입니다.

개정안은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기관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수정의견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수록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행안부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8쪽,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회 활동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근무시간 중에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협의회와 기관장과 의 협의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활동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의 결과 시행령에 규정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정의견은 20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21쪽, 합의사항 이행의 무 부과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관장에게 기관장과 협의회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논의 결과 노동조합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합의사항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정의견은 23쪽, 24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수정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25쪽, 분쟁심의위원회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논의 결과 합의사항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의 의미가 없는 점,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분쟁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29쪽, 연합회 설립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연합회 설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찰청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소위원장 박재호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오늘 논의된 안전에 대해서 경찰청은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를 잘 운영해서 통과되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직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소위원장 박재호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대체로 직장협의회에 관해서 진일보된 내용으로 된 것은 다행인데 사실은 그동안 이런 규정이 안 돼서 못 한 건 아니에요. 우리 행정문화가 과거에는 많이 권위적이고 이렇게 했다가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실제 지금 경찰청장이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지금 직장협의회연대라고 하는 조직은 있지만 그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지역 대표들을 같이 뽑아서 지역 대표들과 함께 소통 메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도로 직장협의회와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글썄요, 바빠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걸 자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의 개선……

지금 제복 입었다고 그래서 과거 같은 지시, 명령만 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유연하게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여러 흐름,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정말 경찰의 능력이나 이런 걸 확충하는 데 이것이 결코 지휘권을 훼손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해 주고.

제가 대체로 알아본 바로는 제복 입은 공무원의 경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경찰이 초반에 들어와서 신입 경찰이 5년 내에 퇴직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은 취업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권위적인 조직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협의, 실질적인 대화 이걸 우선 상급자가 경청하는 게, 그런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경찰청 차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하는 이유를 청장님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새로운 기대도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줌……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5)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7)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5)

(11시11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먼저 2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개정안들은 그러한 추가 특례로

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백혜련 의원안, 박완수 의원안에서 추가하려는 특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백혜련 의원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의 사무특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고, 박완수 의원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선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의 사무특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대도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특례 사무의 성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될 경우 수반되는 효과 및 기존 체계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례를 부여할 사무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을 정리해서 12쪽에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들께서 특례 사항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촉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특례로 제시해 주신 모든 사안들이 그동안에 중앙부처의 고유한 권한, 중요한 기능에 속하는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요. 특히 분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특례 사안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특례시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의 조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관님, 어제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달라진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환경부……

○백혜련 위원 환경부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이미 분권위에서 각 부처, 환경부에서 하겠다고 하고 산림청에서 하겠다고 한 것도 행안부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다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행정안전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어쨌든 간에 이것을 책임지고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자료 작성의 동시성이……

○백혜련 위원 자료 작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 자체를 검토를 안 하고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그래서 특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체계화를 해서, 지방 일괄이양법에 있는 사항과 또 100만·50만 대도시에 대한 특례 또 시군구에 대한 특례 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 인정들이 서로 막 중첩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체계화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관계 부처와 공감을 형성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상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일단 특례시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따로 다시 나중에 법률을 발의하더라도 일단 관계 부처에서 다 합의가 된 부분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차관님, 특례시라는 표현은 100만 이상밖에는 못 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때도 이런 논의가 됐었는데 100만 이상의 특례시 할 거냐 50만 이상의 특례시로 하한을 낮출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법률에 따라서 많은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논의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할 때는 100만 이상 특례시라는 명칭만 줄 뿐이지 그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특혜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심사하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차관님이 안 계셨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때 특례시 명칭 사용……

○김형동 위원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그때 100만 이상 특례시 명칭만 주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별도의 페이지나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심사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할 때 정부가 가졌던 입장하고 배치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재정특례, 재정상의 특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었고요. 그래서 재정상의 특례는 없다, 다만 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례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특례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배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100만 이상 대도시로 교부세가 가면 그 이하의 기초지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형동 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런 문제가 있었냐 하면 대부분 수도권에 100만 도시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창원이나 그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종의 100만 특례시에다가 또 다른 명칭 플러스해서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균형발전에 오히려 저해된다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차관께서는 재정에 한정된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열려 있다는 취지로 말씀 주시는데 그게 구분이나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약간 의문이라는 거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원래 특례시를 뒀던 그 취지가, 그쪽에서 그렇게 특례시를 원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부수법안인 오늘 심사되는 이런 법률안에서 사실상 100만 이상 대도시에 국가적으로 어떤 더 많은 재원을, 아니면 재량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방자치법이 그때 염려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는 그 논의 이전에도 분권법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들은, 중앙부처나 광역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대도시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됐던 거고요. 그에 따른 재정적인 것도 같이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다른 지자체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기능·권한에 대한 이양에 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쟁점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염려되는 우려는 그 지역 내에서 대도시가 또 불균형을 가져오는—특례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원인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안부 입장이 그 당시 때 그렇게 했고요. 일체 특례시 명칭만 부여할 뿐이지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100만 이상의, 그 당시 때 제 기억으로는 칠십몇 개에서 그걸 하게 되면 14개인가 더 포함을 해서 구십몇 개 정도 특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일체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 앉았던 차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맞습니다.

○**김민철 위원** 그러나 100만 특례시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랄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개정할 부분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지금 내용은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 보고 더 판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일단 다음 안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 보지요. 다음 나번.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 15쪽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학교 설립주체로 추가하고,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의한 학교의 설립·이전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학 설립을 통해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자족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를 적절하게 배치하고자 하는 수도권정비법의 목적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립을 교육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체계와의 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학 설립에 관한 문제는 지역 간에 대단히 미묘한 문제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고, 특히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수도권에 100만 이상 도시가 3개나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열게 되면 대학을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수도권 규제법이 좀 무력화, 충돌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의와 근본적인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관계 부처 간에 협의가 지난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18쪽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사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용어를 함께 적용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마지막 21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은 해당 개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까지 그 특례가 확대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본 법안 조문을 정비해 주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 측에서, 행안부가 지방의 권한 확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도시가 돼서 그런 노력을 안 한다라는 지적도 계셨고 또 이게 위원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다 달라서 이러다 보니까 권한만 또는 100만 이상 도시라면 수도권만 집중된다 그러면 지방에 누가 살려고 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행안부가 잘 조율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지방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됩니까라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방에 계시는 양쪽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서 행안부가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이걸로 괜히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사실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다들 완전 특례시 하자 해 놓고 특례시 하니까 또 다 가져간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원래 이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걸 다 넘겨 줘야 하는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런 걸 잘 조율하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분권위에서 의결된 것 안 있습니까? 이 문제는 몇 가지 안은 지금 일부 자기들이 해 준다 했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논의는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행정안전부는 분권위에서 어느 정도 일괄 정리가 되면 하자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입장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분권위에서 정리가 되기 전에 사안별로 동의를 했다 해서 다 이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지도자의 책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조금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형석 위원 이 법률과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백혜련 의원님이나 박완수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시에 대해서는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지방에 대한 소외를 줄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칭만 부여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다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분권위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100만 도시, 즉 재정적 특례는 아니더라도 사무적인 여러 가지 특례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해서 100만 도시, 50만 도시 또는 소멸 대상 지역의 특례도시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혜련 위원 지금 지방분권위에서도 차츰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괄 타결은 단시간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부

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가 된 부분부터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방분권위에서 각 부처하고 해서 이미 합의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완수 의원님한테도 제가 의견을 구했는데 일단 합의된 부분부터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재호 박완수 의원님과 백혜련 의원님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님과 박완수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대다수 행안부하고 똑같이 이것은 분권위에서 일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혜련 위원님 양해 가능하시겠습니까?

○백혜련 위원 동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된 부분까지 통과를 안 시킬 이유는 없는 거지요. 지금 이 법안에서 이미 이견 없이 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합의가 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분이 원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해가 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 자체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당연한 조치가 다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특례시 통과되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걸 하니까, 다른 지방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이견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행안부보고 이런 걸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잘 해 드려서 ‘이것은 당연한 거고 이 정도는 우리가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라고 충분히 설득이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상임위도 2월 달에 여니까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특례시에 대해서 아까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니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양쪽이 좀 조화가 되면 좋겠다.

○백혜련 위원 다수 위원님들이 그런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부산하고도 비교를 한다면 부산이나 울산과 비교해서 진짜 저희 지역만 따져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그것보다 못한 행정적인 대우를 한마디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특례시에 있는 시민들이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역분권, 발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보면 이쪽 측면에서는 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합의까지 됐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계류시키는 것은 저는 쉽게 설득이 안 되는데요.

○소위원장 박재호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2월 임시국회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열리니까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개별적으로 지방에 사는 위원님과 또 수도권에 사는 위원님들의 시각의 차이를 잘 생각하셔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때, 우리 상임위 시작할 때 첫 안건으로 할 거니까 그동안에 더 많은 노력도 해 보시고 또 분권위의 이야기도 잘 좀 더 설득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우리 소위의 위원님들이라도…… 왜냐하면 다양성을 갖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다양성에다가 또 이런 의견을 잘 들으면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양해를 안 해 주시겠지만 양해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재호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관련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요?

○소위원장 박재호 제가 볼 때는 12시 10분까지 끝마치기로 했으니까요, 이거 하고 한 3건만 하지요. 12·13·14 정도, 3건만 하면 안 될까요? 14·15는 같이 묶여져 있구나. 그러면 2건만 하

고 끝내겠습니다.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47)

(11시37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최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위원회 인력 확충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정원은 11명으로 지원단 직제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원은 16명입니다.

2021년 6월 8일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이 만료되고 2021년 12월 8일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개정안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신속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조사인력을 확충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원단 정원은 지원단 직제규칙에 정해진 사항으로 정원 증원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고 3쪽에서 보시듯이 다른 과거사 법령의 입법례를 살펴볼 때도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원 한도는 직제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직제에 관한 부분은 법률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

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다음은 5쪽의 진상규명 기간 연장입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2020년 6월 9일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021년 3월에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확인됨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상규명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기간과 관련하여 그동안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총 활동기간이 6년 8개월에 이르고 새로운 자료 확보에 따른 추가 조사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른 과거사 관련 입법례와 같이 일정 기간 연장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필요하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을 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의사일정 제12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성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00)

1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89)

1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8)
(11시42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서 전체회의의 의결이 없는 이상 공청회 실시가 필요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명수 위원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 증진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어쨌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떤 시급성이나 논란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심의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공청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자.

또 다른 위원님들……

김형동 위원님, 같은 의견입니까?

○김형동 위원 예,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실시 후에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형동 위원 2건 끝났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박재호 그래도 시간이 12시까지 좀 남아서…… 이것도 공청회를 하는 거라서 그것까지만 하고 합시다.

16.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059)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92)
(11시43분)

○소위원장 박재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 역시 제정법안으로 전체회의의 의결이 없는 이상 공청회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 이게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공청회를 하자고 해 놓고 안 한 거예요. 다시 상정이 됐거든요. 공청회를 같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빨리 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청회 후에 법안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재호 그러면 이것은 공청회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끼리 의논을 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실시 후에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 소위 공청회지요, 상임위 공청회가 아니고?

○소위원장 박재호 소위 공청회를 해도 되고 상임위 공청회를 해도 되거든요.

○이명수 위원 그것도 우리 논의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상임위 공청회인데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소위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논의해야지요.

○김민철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소위원장 박재호 그것은 여야 간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민철 김형동 박재호 백혜련
이명수 이영 이형석 최준식

○청가 위원(1인)

이해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경찰청차장 진교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선 거 국 장 김 재 원